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2003. 12. 15
[조례 제71호]

개정 2007. 5. 11 조례 제234호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5 조례 제8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4, 2019. 10. 25>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가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5>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외대상 업종)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주로 차, 아이스크림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1, 2018. 12. 14, 2019. 10. 25>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

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0. 2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1. 보조금 지원
2. 전용수거용기 지급
3. 종량제 봉투 지급
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물품의 제작·지원 등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2019. 10. 2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2. 14>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2019. 10. 25>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를 수거·운반 및 처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신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필증(칩)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④ 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칩)의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0. 25>

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2019. 10. 25>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았을 경우 군수는 당해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8. 12.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1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부칙(2019. 10. 25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예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신설 2019. 10. 25>

납부필증(칩) 공급 및 판매금액(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전용수거용기 용량	공급금액	판매금액	비 고
업소용	20 ℓ	640	700	
	60 ℓ	1,930	2,110	
	120 ℓ	3,860	4,220	

- 주) 1. “업소”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급금액이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증평군이 공급하는 납부필증의 가격을 말하고, 판매금액이란 판매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하는 납부필증의 가격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 고 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전화 :)					
사 업 장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 산 물 처 리			
	처리 방법	처리 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 산 물 발 생 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일			
자 가 재 활용계획	재 활 용 량				재 활 용 방 법		재 활 용 장 소	
	kg/월							
위탁재활 용 계 획	위 탁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 탁 업 소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증평균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 소		(전화:)			
처리 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 치 신고일	재활용 장 소	위 탁 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 감량	kg/월							
자기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증평균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 의 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illegible]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 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신고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전화 :)				
사 업 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 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kg/일)	연 간 처리량	부 산 물 처 리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량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업 종	주소·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증 평 군 수 귀하							